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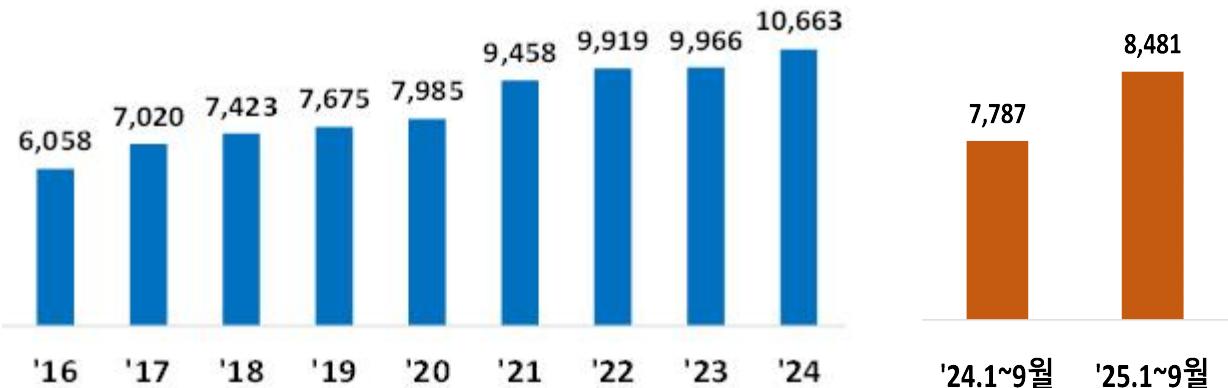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 … 도축검사 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 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 물품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최근 10년간 케이(K)-푸드 수출액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는 인증서류 및 품목 >

구분	인정 서류	발급기관	품목(신규)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신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쇠고기·돼지고기(신선·냉장·냉동)
수산물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활넙치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활넙치, 붕장어·방어(활어·신선·냉장·냉동)

-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 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

일반 수출품목(8종)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및 - 원산지입증자료(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도축검사증명서 【붙임3】

- 또한,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진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케이(K)-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
 -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 2. 도축검사증명 제도**
- 3. 도축검사증명서**
- 4. 원산지 간편인정 신규 지정 품목**
- 5. 케이(K)푸드 수출 현황**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책임자	과장	김태용 (042-481-3230)
		담당자	사무관	백종철 (042-481-3212)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

- (개념)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 등록증 · 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 (법적근거)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則§12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則§12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대상) 관세청 고시로 서류 21종, 품목 1,245개 지정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간편인정 서류 및 발급기관 >

구 분	인정서류	발급기관	품목(개)
농산물 (5종)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1,030
수산물 (7종)	⑥ 물김 수매확인서 ⑦ 마른 김 수매확인서 ⑧ 수산물 품질인증서 ⑨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⑪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⑫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	완도수협 등 15개 수협 장흥수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97
축산물 (4종)	⑬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⑭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⑮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⑯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평가원	6
식품류 (3종)	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⑱ 우수천일염인증서 ⑲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시·도지사	37 1 1
지역특산품 (1종)	⑳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	제주특별자치도청	48
재활용 공산품(1종)	㉑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25

불임2

도축검사증명 제도

< 도축검사증명 제도 >

- (개념)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도축되는 가축, 식육을 정부·지자체 소속 검사관이 검사하여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 (대상) 식용 목적으로 도축장에 도축되는 가축(소, 돼지 가금류 등)
- (주요 기재사항) 가축 종류, 이력번호, 중량, 도축장 명, 도축일자 등

※ 이력번호와 축산물이력제

- 도축검사증명서에는 이력번호가 기재되며, 이력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됨
 - *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이력제 대상 가축은 소('08년)를 시작으로 수입 쇠고기('10년), 국내산 돼지고기('14년), 수입 돼지고기('18년)로 확대되었으며, '20년부터는 가금류(닭·오리·계란)까지 포함하여 운영 중심
- 국내산과 수입산에 따라 이력번호 부여 방식이 달리 적용되며, 해당 이력번호를 통해 각 단계별 이력 내역이 관리됨 * 동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9, 11]

< 이력번호 조회 화면 >

1 소 개체정보

- 이력번호
- 출생년월일
- 소의 종류, 성별

2 소 출생 등 신고정보

- 농장경영자(농장식별번호)
- 신고구분
- 난별
- 사육자

3 도축 및 포장처리정보

- 도축장
- 도축일자
- 도체중
- 육질등급

4 구제역 백신접종 및 가축질병 검사 정보

- 구제역 예방접종 최종일자
- 럼피스킨 백신접종 최종일자
- 브루셀라 검사결과
- 혈당인증
- 결핵 검사결과
- 혈당인증

5 유통과정

- 소 유통 단계

붙임3

도축검사증명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4. 16.>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2. 두수 및 이력번호(소·돼지·닭·오리만 해당합니다):

3. 중 량: 지육 kg, 내장 등 기타 kg

4. 작업장명:

5. 검인번호:

6. 도 축 일: 년 월 일

7. 도축 의뢰인: 주 소
성 명

8.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여, []부

9.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10.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kg), 식용 외의 용도전환(kg)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붙임4

원산지 간편인정 신규 지정 품목

구분	원산지증빙 인증서류	간편인정 선정품명	HS번호(6단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쇠고기 (Meat of bovine animals)	0201.10/20/30(신선·냉장) 0202.10/20/30(냉동) 0206.10/29(설육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Meat of swine)	0203.11/12/19(신선·냉장) 0203.21/22/29(냉동) 0206.30/49(설육 신선·냉장·냉동)
수산물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활넙치 (Bastard halibut/Paralichthys olivaceus)	0301.99
		활넙치 (Bastard halibut/Paralichthys olivaceus)	0301.99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붕장어 (Conger eel)	0301.99(활어) 0302.89(신선·냉장) 0303.89(냉동)
		방어 (Yellow tail)	0301.99(활어) 0302.89(신선·냉장) 0303.89(냉동)
재활용 공산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재활용 황산망가니즈 (Recycled Manganese sulfate)	2833.29
		재활용 황산코발트 (Recycled Cobalt sulfate)	2833.29
		재활용 탄산리튬 (Recycled Lithium carbonate)	2836.91
		재활용 수산화리튬 (Recycled Lithium hydroxide)	2825.20
		재활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Recycled high density polyethylene)	3901.20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Recycled polypropylene)	3902.10

붙임5

케이(K)-푸드 수출 현황

□ 연도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1~9	'25.1~9
금액	5,653	6,058	7,020	7,423	7,675	7,985	9,458	9,919	9,966	10,663	7,787	8,481
증감률	△4.5	7.2	15.9	5.7	3.4	4.0	18.5	4.9	0.5	7.0	6.5	8.9

□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1~9월		2025년 1~9월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케이(K)-푸드	9,919 (100.0)	4.9	9,966 (100.0)	0.5	10,663 (100.0)	7.0	7,787 (100.0)	6.5	8,481 (100.0)	8.9
가공식품	5,842 (58.9)	2.7	5,995 (60.2)	2.6	6,619 (62.1)	10.4	4,871 (62.6)	9.7	5,198 (61.3)	6.7
농산물	877 (8.8)	△7.8	895 (9.0)	2.0	905 (8.5)	1.1	620 (8.0)	△1.6	655 (7.7)	5.6
수산물	2,959 (29.8)	12.5	2,806 (28.2)	△5.2	2,855 (26.8)	1.7	2,092 (26.9)	1.7	2,326 (27.4)	11.2
임산물	27 (0.3)	△11.6	32 (0.3)	21.0	26 (0.2)	△20.6	15 (0.2)	△20.4	19 (0.2)	24.6
축산물	215 (2.2)	35.2	237 (2.4)	10.5	259 (2.4)	9.2	188 (2.4)	13.9	283 (3.3)	50.3